

## 공연장대관세칙

제 정	2005. 05. 12	개 정	2019. 02. 11
개 정	2005. 08. 25	개 정	2022. 03. 02
개 정	2006. 07. 14	개 정	2023. 06. 28
개 정	2007. 03. 30	개 정	2025. 05. 13
개 정	2007. 08. 31		
개 정	2007. 12. 26		
개 정	2008. 04. 01		
개 정	2008. 10. 13		
개 정	2010. 02. 12		
개 정	2010. 11. 08		
개 정	2011. 11. 04		
개 정	2016. 05. 09		
개 정	2017. 03. 28		
개 정	2018. 08. 06		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, 기본시설(오페라하우스, 콘서트홀, 앙상블시어터, 성남아트리움 대극장, 성남아트리움 소극장)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(이하 “대관”이라 한다)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8.25., 2007.3.30., 2022.3.2.>

제2조(대관범위) ① 대관의 대상은 공연, 연습, 녹음,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, 설비 및 부수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 
 ② 대관의 범위는 재단의 대관규정에 따르며, 그 외의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 <개정 2010.2.12.>

제3조(대관신청) 정기대관 신청은 오페라하우스, 콘서트홀, 앙상블시어터, 성남아트리움 대극장, 성남아트리움 소극장으로 차기 연도 공연에 대해 각 연 1회로 하며, 신청기간은 매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. 단, 수시 대관은 당해 연도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,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2, 3년 후의 공연도 신청, 승인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8.25., 2007.3.30., 2010.2.12., 2022.3.2., 2023.6.28.>

제4조(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0.2.12.>  
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  
 ④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며 3명 이상의 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의위



원회와 4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심의위원회로 구성, 대표이사가 위촉한다.

<개정 2010.2.12.>

⑤ 외부심의위원회의 위촉기간은 정기대관 및 50건 이상의 수시대관 심사일에 한한다.

<신설 2007.3.30.> <개정 2010.2.12.>

⑥ 50건 이하의 수시대관 심의에는 자체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. <개정 2010.2.12.>

⑦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며, 대관심의 기준은 공연 내용과 단체 수준,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재단이 정하되, 심의는 다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.

1.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.
  2. 개인과 단체가 경합 시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.
  3. 오페라하우스 및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은 오페라, 뮤지컬, 콘서트 등 대형 공연물과 장기공연물 등 대형 공연물을 우선 대관한다. <개정 2007.3.30., 2022.3.2.>
  4. 콘서트홀은 행사대관은 승인하지 않는다. <개정 2007.3.30.>
  5. 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05.8.25.>
  6. 콘서트홀을 제외한 공연장의 경우,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. <신설 2023.6.28.>
- ⑧ 삭제 <2022.3.2.>

제5조(일정경합 시 결정기준) 단체 및 개인 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.

제6조(대관신청) ① 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“[별지 제1-1호 서식](#)”의 공연장 대관신청서에 “[별지 제1-2호 서식](#)”의 공연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자에 한함)을 성남문화재단 온라인 대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6.28.>

② 촬영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는 “[별지 제1-3호 서식](#)”의 촬영대관 신청서를 촬영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자에 한함)을 첨부하여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06.7.14.>

③ 기타 시설 및 대관계약 후 추가·변경·취소되는 사항은 별지서식 양식으로 갈음하며 대관자는 변경사유 발생 시 재단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4.1.>

제7조(대관신청 공고) ① 정기대관 신청공고는 재단 정보지 및 재단 게시판,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12.>

② 수시대관 신청 공고는 재단 게시판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대관상담 및 유선을 통해 안내한다.

제8조(대관신청 제한) 대관규정 제10조 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네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 단, 지역 문화 예술 증진을 위한 활동의 경우 재단이 정한 별도의 기간에는 신청 가능하다. <개정 2023.6.28.>



1. 미취학아동으로 구성된 단체 및 개인의 경우 <신설 2023.6.28.>
2.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경우 <신설 2023.6.28.>
3. 재단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는 행사, 후원, 기부, 추첨 등을 진행하는 경우 <신설 2023.6.28.>
4. 공연 및 행사의 내용, 작품성 등 재단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의 경우 <신설 2023.6.28.>

제9조(대관승인) ① 대표이사는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, 그 결과를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의 “대관 승인서” 혹은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의 대관불가통보서”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2.12.>

②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의 성남아트센터와는 “별지 제4-1호 서식” 성남아트리움과는 “별지 제4-2호 서식”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8.25.>

③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은 성남아트센터와는 “별지 제5-1호 서식” 성남아트리움과는 “별지 제5-2호 서식” 부대설비사용신청서를 대관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5.8.25.>

④ 사용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,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,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.

⑤ 사용 내용 및 대관 일정 변경 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<신설 2023.6.28.>

1. 프로그램, 출연진, 장르 등 재단이 승인한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<신설 2023.6.28.>
2. 공연장 대관 세칙 제 10조에서 정하는 사용 시간 외로 공연 시작 시간을 변경한 경우 <신설 2023.6.28.>
3. 사용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<신설 2023.6.28.>
4. 변경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경우 <신설 2023.6.28.>
5. 대관 세칙 제4조 7항 6호에 해당되는 경우 <신설 2023.6.28.>

제10조(사용시간) ① 재단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오전 09:00부터 12:00까지(3시간) 단서삭제 <2023.6.28.>
2. 오후 13:00부터 17:00까지(4시간)
3. 야간 18:00부터 22:00까지(4시간)
4. 삭제 <2022.3.2.>
5. 무대 휴게시간 : 12:00~13:00, 17:00~18:00 <신설 2023.6.28.>

② 장기대관의 경우 공연준비와 공연 회수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의 모든 시간을 점유,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(단, 장기대관은 5일 이상의 대관을 뜻한다) <단서신설 2007.3.30.> <개정 2023.6.28.>

③ 제 1항에서 규정한 사용 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 <단서신설 2005.8.25.> 단서삭제 <2022.3.2.> <개정 2023.6.28.>

④ 공연은 저녁1회를 원칙으로 하되 1일 2회이상의 공연 시 공연시간 및 횟수는 재단과 합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07.3.30., 2023.6.28.>



⑤ 방송, 영화, CF, 화보촬영 등을 위한 대관인 촬영대관은 3시간 기준으로 대관료를 징수한다. 3시간 이내의 초과 촬영분이 발생하더라도, 3시간 기준으로 추가 대관료를 징수한다. <신설 2006.7.14.>

⑥ 공연 대관이란 1회 공연을 위하여 공연당일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공연당일 1회의 리허설을 기본으로 포함한다. <신설 2023.6.28.>

⑦ 1일 2회 이상의 공연 시 각 공연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이상의 객석, 로비 정비 및 준비 시간을 편성해야 한다. 부득이하게 공연 시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신설 2023.6.28.>

**제11조(사용료)** ① 사용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대관 규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②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계약 전 재단이 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하고 단, 사전 매표 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3.30., 2022.3.2.>

③ 수시 대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, 잔금은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사용 승인 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20일(대극장의 경우 30일)이내 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부대설비 및 무대기술 지원 및 외부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성남아트센터는 “별표 1”, 성남아트리움은 “별표 2”, 외부시설사용료는 “별표 3”과 같다. <개정 2005.8.25., 2006.7.14.>

⑤ 대표이사는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기준 사용료 이상의 수익금 분할방식 등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0.2.12.>

⑥ 성남시 문예기금 지원단체 및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이 시설사용 시 지방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공연에 대하여 기본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30%를 연 3회에 한하여 할인 할 수 있다. 단, 성남아트리움 소극장은 성남시를 주소로 하는 성남시민에 연 횟수 제한 없이 20% 상시 할인할 수 있다. <신설 2007.3.30> <개정 2010.2.12., 2010.11.8., 2022.3.2.>

⑦ 재단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8.4.1.>

**제12조(입장권의 발행)** ①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하며 최소 수량은 설치좌석 수의 40%이상으로 대표이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. <개정 2010.2.12., 2023.6.28.>

② 입장권 및(초대)교환권 발행은 재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재단이 인정하는 입장권 판매 대행사를 이용한 전산발권을 의무화 한다. 단, 재단이 공연장 운영상 필요


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08.4.1.>

③ 좌석수 이상 입장권 및(초대)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발생 시 그 모든 민·형사상책임은 대관자가 지고, 필요 시 재단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. <신설 2008.4.1.>

④ 국가 및 성남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.

⑤ 입장권 검인 시에는 좌석 구분표 및 가격표를 명시하여 공연 20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3.6.28.>

⑥ 입장권 및 교환권은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,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재단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8.4.1.>

제13조(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) ① 입장권 매표는 대관자 책임으로 하되, 재단이 지정한 입장권 판매대행사에 입장권의 등급별 총 수량의 20% 이상을 위탁판매하여야 하며,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. <개정 2008.4.1.>

② 재단의 입장권 판매 대행수수료는 대금지급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따라 재단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<개정 2008.4.1.> 삭제 <2023.6.28.>

제14조(공연진행 협의)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최소 3주일 전에 재단이 주최하는 종합스태프회의에 관련 스텝이 참석해야 한다. 또한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 2일전까지 재단 내 공연장 대관 부서 및 무대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05.8.25., 2022.3.2., 2023.6.28.>

② 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3.6.28.>

1. 대관자는 공연 진행을 위한 객석 및 로비 내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. <신설 2023.6.28.>

2. 대관자는 사전에 협의된 공연 진행 제반 사항위반에 따른 재단의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. <신설 2023.6.28.>

3. 대관자는 원활한 현장 운영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매표소에 상주해야 한다. <신설 2023.6.28.>

4. 재단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는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 할 경우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. <신설 2023.6.28.>

③ 재단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하며 그 수량은 아래와 같다. 단, 유보좌석번호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\* 대관자는 유보석에 대하여 재단에 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. <개정 2023.6.28.>

1. 오페라하우스(총 20매) 1층 10열 17~22번, 17열 22~27번, 21열 13~16번, 33~36번 <개정 2007.3.30., 2010.11.8., 2022.3.2.>

2. 콘서트홀(총 12매) 1층 9열 21~24번, 12열 29~32번, 14열 29~32번 <개정 2007.3.30., 2010.11.8., 2022.3.2., 2023.6.28.>

3. 양상블시어터(총 4매) 1층 11열 7~10번 <개정 2007.3.30., 2023.6.28., 2025.5.13.>

4. 성남아트리움 대극장(총 8매) 1층 9열 13번~16번, 12열 6~9번 <신설 2005.8.25.>  
 <개정 2022.3.2., 2023.6.28.>

5. 성남아트리움 소극장(총 4매) 1층 2열 7~8번, 3열 8~9번 <신설 2005.8.25.> <개정, 2022.3.2., 2023.6.28.>

④ 사용자는 공연당일 총 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15부와 포스터 3매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.(진행용 프로그램 10부, 재단 보관용 프로그램 5부, 재단 보관용 포스터 3매)  
 <개정 2023.6.28.>

⑤ 사용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5일전 까지 재단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. 단,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,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.

⑥ 공연진행은 공연개시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.

⑦ 공연장 내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게첨할 수 없다. 단, 행사 시 현판 및 현수막 게첨은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게첨하여야 한다.

⑧ 촬영대관 시 대관자는 극장의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, 시설물의 훼손이나 손실 시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신설 2006.7.14.>

제15조(공연의 취소 및 중지) ① 대관자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시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,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.

②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, 재단과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을 처리하고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는 외에는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.

③ 재단의 고의나 부주의가 아닌 예측하지 못한 기계결함 등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다. <신설 2008.4.1.>

제16조(관할법원) 삭제 <2018.8.6.>

제17조(세칙 위반 시 책임) 이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18조(세칙의 효력) 이 세칙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
제19조(규정 외 사항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세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08.4.1.>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1.11.4.>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